

청주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 정 2002. 3. 20 규칙 제1084호
1차 개정 2012. 9. 18 규칙 제1301호
2차 개정 2018. 2. 28 규칙 제1460호
3차 개정 2019. 11. 21. 규칙 제15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외국인,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 책임시간) 본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

제4조(책임시간의 일부면제) 총장은 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을 청주교육대학교 교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강사료 지급) ① 초과 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주당 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초과된 시간수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2. 강사의 강사료는 방학 중 임금을 포함하여 임용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 11.21.)
- ② 강사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학기말 또는 연도말 종강의 경우 1주 미만은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강의시간은 다음에 의한 시간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1.)

구 분	전임교원 초과강의	강사	원어민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담당시간 (주 당)	6시간	6시간	20시간	4시간	9시간	9시간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는 주당 9시간, 겸임·초빙교원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제7조(강사료 지급 기준액)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외국인, 국내·외 저명인사의 시간강사료는 기준액의 5배이내
2. 삭제
3. 2개반 이상의 합반 운영 또는 대단위 강의의 강사료는 기준액의 1.5배

제8조(강사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의 시험감독시간
2. 정규 강의 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여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3. 국책사업 등으로 타 대학과 교류한 경우 책임시간 이외의 초과 강의시수

제9조(외국인 초빙강사료) 상근하는 외국인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강사료 지급기일) 특수 및 특별강의의 강사료를 제외하고 당월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8. 규칙 제13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규칙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1. 규칙 제1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